

상해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보상 용어집

접수된 청구: 보험회사가 당신의 상해 또는 질병을 노동자 보상에 의해 처리하는데 동의하는 청구. 청구가 접수되어도 지연되거나 다른 문제 발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인된 청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 감독관 (AD): 노동자보상사업과의 운영 책임자.

합의 의료 감정사 (AME): 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료 검사를 수행하는 의사. 당신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유자격 의료 감정인(QM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ME 를 참조하세요.

대체업무: 전 사용자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업무. 의사가 당신이 상해를 당했던 당시의 업무에 복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보충직무 배치전환 급여 또는 직업재활 급여를 받는 대신에 대체업무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대체업무는 당신의 작업제한에 적합해야 하고, 적어도 12 개월간 지속되어야 하며, 임금과 수당 수준은 상해를 받기 이전 수준에 비하여 적어도 85%가 되어야 하며, 통근은 상해를 입을 당시의 거주지에서 합당한 거리 이내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미국의학협회(AMA): 전국 의사들의 그룹. AMA 는 "영구장해 감정지침"이라고 칭하는 안내지침서를 발간합니다. 당신의 영구장해가 2005 장애표에 미달할 경우, 의사는 AMA 의 지침서를 사용하여 당신의 장해 등급을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장애인법(ADA):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당신이 장애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ADA 에 의거한 권리에 관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EEOC 사무소의 연락처는 1-800-669-4000 또는 1-800-669-6820 (TTY)입니다.

AOE/COE (업무기인성 그리고 업무수행성 발생): 당신의 상해는 직무 관련, 그리고 직무 수행이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심 위원회: 주지사가 임명하는 7 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노동자 보상 행정법 심판관의 판정을 재심하고 재고려하는 위원회. 재고려 위원회라고도 부릅니다. 노동자 보상 재심위원회를 참조하세요.

신청인: 지역 노동자보상청구위원회(WCAB) 사무소에 청구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케이스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일반적으로 당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의 변호인: 당신의 노동자 보상 케이스에서 당신을 대리하는 법률가. 신청인이란 상해를 당한 노동자인 당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구 조정 신청서(신청서 또는 app): 지역 노동자보상재심위원회(WCAB) 사무소에 케이스를 제기하는 서류양식으로서, 당신의 청구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작성합니다.

보험액 할당: 당신의 영구장애에서 직무상 상해로 인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다른 장애로 인한 것은 얼마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

감사위원회: 분쟁처리팀의 결정에 반발하는 고발을 접수하는 DWC 내부 부서. 이 고발은 회사가 항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령액 통지서: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받게 될 수령액을 알려주는데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양식. 통지서 라고도 합니다.

Cal/OSHA: 주 직업안전과 건강 사업부(DOSH) 내부 부서. Cal/OSHA 는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조사하고 법을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132a 조: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는 당신과, 당신의 케이스에서 증언하는 동료에 대하여 취하는 차별조치를 금지하는 노동자 보상법.

카브아웃: Carve-out(카브아웃)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노조가 단체교섭 동의에 의거, 노동자 보상 급여 지급과 분쟁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대안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청구양식(Dwc-1): 직무상 상해나 질병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데 사용하는 양식.

청구 조정인: 청구 처리인을 참조하세요.

청구 처리인: 당신이 제기하는 노동자 보상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기관 등을 지칭하는 용어. 대부분의 청구 처리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또는 사용자의 편의 제삼자를 위해 일합니다. 일부 청구 처리인은 직접 청구를 자체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사용자를 위해 일합니다. 청구 조사인 또는 청구 조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구 조사인: 청구 처리인을 참조하세요.

보건, 안전, 노동자보상 위원회(CHSWC): 주 지정 기관으로서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의 보상관련 업무와 작업장 보건과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안 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시금: 당신의 영구장애 심판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는 노동자보상 심판관의 명령.

합의와 적용(C&R): 당신이 일시불을 수령하고, 이것은 장애 의료 치료 지불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되는 합의의 일종. 이와 같은 합의는 노동자 보상 심판관이 승인해야 합니다.

누적 상해(CT): 작업장에서 반복적인 일이나 노출에 의한 상해.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생기는 손목 손상이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청력 상실.

상해일: 당신이 다치거나 아픈 시기. 그 상해가 한 번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일이 발생한 날짜가 상해일이 됩니다. 만약 그 상해가 반복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라면(누적 상해), 상해일은 해당 상해가 작업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거나 그렇게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날짜.

사망 보상금: 직업상 재해나 병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진행준비 선언서(DOR 또는 DR): 당신이 분쟁을 해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보상 심판관 앞에서 청문회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양식.

피고: 일반적으로 당신의 사용자 또는 그와 같은 편의 보험회사로서, 급여 또는 서비스에 관한 당신과의 분쟁에서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

지연 통지서: 보험회사가 지불 지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신에게 발송하는 우편물. 이 통지서는 지불이 처리 되기 전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며 지불이 이뤄지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관한 내용도 알려줍니다.

기각된 청구: 보험회사 측에서 당신의 상해나 질병이 노동자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그 결정을 통지한 청구.

직원 직무 명세 (DWC 양식 # AD 10133.33):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자의 직무상 의무를 기입하는 양식. 이 양식은 의사가 노동자의 직무 복귀능력 여부 판정을 위한 검토에 사용됩니다.

장애: 당신의 생활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 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조건.

장애판정위원회(DEU): DWC 내부 부서로서 의료 보고서를 근거로 영구장애의 정도를 퍼센트로 계산함. 장애 등급 판정관을 참조하세요.

장애 관리: 장애가 시작된 이후에 취하는 장애 발생 예방 또는 조기개입 과정으로서 지속적인 고용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척추 상해와 같은 증상의 경우 회복 과정 초기에 이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개 재활 간호사가 당신에게 배치되며, 당신의 의학 치료 경과를 보험회사에 보고됩니다.

등급 판정관: DWC 장애 감정부서의 직원으로서 당신의 의료 기록 또는 당신의 상태를 기술한 의학-법률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신의 영구장애 등급을 매깁니다.

장애 등급: 영구장애 등급을 참조하세요.

차별 청구(노동법132a): 당신이 해고를 당하거나 여타의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자보상 청구를 위해 제기하는 탄원.

분쟁: 급여, 서비스 또는 여타의 이익에 대한 당신의 권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노동자보상사업부(DWC): 주 산업관계국(DIR) 이내의 사업부. DWC는 노동자 보상법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자 보상 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며, 상해를 입은 노동자와 이밖의 대상자에게 노동자 보상 체계와 관련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자 조정관리 시스템(EAMS): 노동자 보상 케이스 관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

직원: 특정한 개인 또는 조직의 통제를 받아 활동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미등록 노동자와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사용자: 당신의 직무 활동을 통제하는 사람 또는 조직.

인체공학: 작업장과 작업수행 직원의 물리적 요구들 사이에서 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 이 학문은 장비, 도구, 업무과업, 그리고 작업환경을 선택하거나 설계하거나 수정할 때 사람 능력의 다양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된다.

핵심 기능: 당신이 원하거나 종사 중인 직무에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임무. 대체 작업을 고려할 때, 당신에게는 직무의 중요한 기능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체적 자격과 정신적 자격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고용과 주택법(FEHA):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당신이 장애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FEHA에 의거한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 정당 고용 및 주택국, 1-800-884-1684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FEHA가 미국연방장애인법보다 더 많은 보호조치를 취합니다(ADA).

가족과 의료 휴가법(FLMA): 중증 건강문제가 있거나, 연간 최대 12 주까지 무급으로 아동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살펴야 하는 특정 직원에게는 연방법에 의하여 직업보호 휴가가 제공됩니다. 휴가기간 동안 그룹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미국 노동부 전화번호인 1-866-4-USA-DOL 에 연락하십시오.

제소: 법적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사용자 또는 정부기관에 문서를 발송하는 것. 제소일은 문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최종 명령: 노동자 보상 심판관이 내리는 모든 명령, 결정, 또는 심판으로서 적시에 항소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판정 & 심판(F&A): 노동자보상행정법 심판관이 지급 문제와 미래에 당신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가 요양을 포함하여 당신의 케이스에 대하여 내리는 서면으로 된 결정서. 항소가 없는 한 F&A는 최종 명령이 됩니다.

사기: 노동자 보상급여를 받거나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도적인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한 언급.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최대 \$150,000까지의 벌금 또는 최대 5년까지의 징역입니다.

장래 치료: 직업 관련 상해에 대해 계속 진행되는 의학 치료를 받을 권리.

의료기관(HCO): 산업관계국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노동자 보상 시스템 범위 이내에서 관리된 의학적 돌봄을 제공함.

청문회: 분쟁 또는 제안된 합의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가 케이스 관련 문제를 토론하거나 정보를 접수하는 법적 절차.

장해 등급: 당신의 상해입은 신체 부분을 사용할 때 정상적인 사용의 상실 정도를 퍼센티지로 추정하는 것. 장해등급은 미국의학협회(AMA)가 출간한 지침서를 근거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은 당신의 영구장애등급 산정에 사용되지만 영구장애등급과는 다릅니다.

자기번호: 변호인 없이 출석한 상해입은 노동자.

독립 청구서 검토(IBR): DWC와 계약된 독립적인 주체의 의해 수행되는 청구서 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절차.

독립 계약자: 이 용어에 대해 규정된 정의는 없습니다. 노동법 집행기관과 법원은 어떤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 보상과 기타 급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그릇되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신이 독립 계약자이며 노동자 보상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독립적인 계약자는 자신이 하는 일의 처리방법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할 경우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신이 하는 작업의 세부 내용과 방법을 통제함
- 당신과의 관계를 종료시킬 권리가 있음
- 당신에게 시급 단위의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함
-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에 대한 금액을 공제함
- 재료와 도구를 공급함
- 당신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에 일할 것을 요구함

독립적인 의학 검토(IMR): DWC와 계약된 독립적인 제삼자에 의해 수행되는 의학 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절차. 상해를 입은 노동자의 의학 치료 신청이 거부되거나, 수정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당사자만 **IM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학 검토 기관(IMRO): 이 기관은 해당 케이스가 의학 검토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케이스가 적합할 경우, 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이것이 정규 또는 촉진 검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검토 수행시 반드시 제공되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보&지원(I&A) 담당관: DWC 직원으로서 상해를 당한 노동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문서로 된 자료를 준비하고 정보제공 워크숍을 주관하고 제기되는 문제의 비공식적 해결을 위한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

정보&지원(I&A) 부서: DWC 내부 부서로서 노동자 보상 청구를 한 모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의 비공식적인 해결 활동을 함.

상해와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자가 개발하여 실행해야 함. 이 프로그램은 Cal/OSHA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심판관: 노동자보상행정법 심판관을 참조하세요.

유치권: 노동자의 보상 케이스에 대한 지급금 확보를 위한 권리. 의료 시행자와 같은 유치권 청구인은 지역 노동자보상항소위원회에 서식을 제출하여 노동자 보상 케이스 관련 의무가 있는 금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착수 수수료: 2013년1월1일 전일까지 제기한 유치권에 대하여 유치권 청구인에게 필요한 수수료. 이 수수료는 DOR이 제기될 때 지급해야 하며, 유치권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2014년1월1일까지 해제됩니다.

유치권 신청 수수료: 2013년1월1일 이후에 신청하는 의료치료 관련 유치권이라면 모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수 합의회의(MSC): 재판이 이뤄지기 이전에 합의를 위해 토론하는 회의.

의학적 최대 호전(MMI): 당신의 상태가 훌륭하게 안정화되었고 다음 해에도 의학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아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상태. 당신이 MMI 상태에 이르고 나서, 의사는 직업 상해에서 비롯된 영구장애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재 회의: I&A 담당자 면전에서 이뤄지는 분쟁 해결을 위한 자발적 회의로서 당신의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 개최.

의료: 의학 치료를 참조하세요.

의학적-법적 보고서: 당신의 의학적 상태를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의사가 작성. 이 보고서는 의료 문제 분쟁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됩니다.

의료 마일리지: 당신의 의료 검진 약속, 치료, 약국 방문, 그리고 기타의 의료 관련 여행으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환급(주차와 통행료 포함) 대상이 됩니다.

의료 시행자 네트워크(MPN): 의료 시행자들의 기관 또는 그룹으로서 보험업자 또는 자가 보험가입 사용자들이 설립하고 DWC의 행정감독관이 승인하며, 직업 현장에서 상해를 당하는 노동자들 문제를 다룹니다.

의학 치료: 작업 관련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을 치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치료. 의료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의학 부서: DWC 내부 부서로서 의료시행자 네트워크들(MPNs), 독립적인 의학 검토(IMR) 의사들, 의료기관들(HCOs), 유자격 의료 감정인들(QMEs), QME 패널, 활용도 심사(UR) 계획들, 그리고 척추 수술 2차 소견 의사들을 관장합니다.

수정된 직무: 당신의 예전 종사 직무로서,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약간 변경된 형태. 주치의가 당신이 상해를 입을 당시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사용자는 보충 직무 배치전환을 하기 보다는 수정된 직무를 제공하도록 권장받습니다.

양도불가 바우처: 보험회사에서 받는 문서로서 당신과 보험회사가 작성해야 함. 이것은 보충직무 배치전환 급여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비 지출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통지서: 수령액 통지서를 참조하세요.

객관적 요소: 치료 담당의사, QME, 또는 AME가 당신의 영구 장애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측정, 직접관찰, 그리고 검사결과.

오프 켈린더(OTOC): 보류 조치 없이 적용되는 WCAB 케이스.

수정 또는 대체직무의 제공(DWC-AD10133.53): 다음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받는 문서: 당신이 2004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사이에 상해를 당했으며, 치료 담당의사가 당신이 영구장애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당신의 사용자가 보충직무 전환배치 급여 대신에 수정 또는 대체직무를 제공함. 이 서류양식에는 사용자가 당신을 직무에 복귀시키기 때문에 15%까지 감액되는 영구장애 지급액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정규, 수정, 또는 대체직무의 제공(DWC-AD10133.35): 다음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받는 문서: 당신이 2013년 1월1일 이후에 상해를 당했으며, 치료 담당의사가 당신이 영구장애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당신의 사용자가 보충직무 전환배치 급여 대신에 정규, 수정 또는 대체직무를 제공함.

유자격 의료감정단(QME): DWC 의학부서가 발급하는 3명의 독립적인 유자격 의료감정단(QME)의 명단. 당신은 3명 가운데 누구라도 선택하여 감정을 받습니다. 당신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다른 법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보통 여기에는 보험회사, 당신의 사용자, 그리고 당신의 청구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밖의 모든 사람들(지불이 이뤄지지 않은 의사 또는 병원)이 해당됩니다.

범칙금: 당신의 청구에 대한 조치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당신이 수령하는 일정한 금액의 금전. 당신의 사용자 또는 보험회사가 지불하며, 범칙금 금액은 지불 지연 1회마다 10%의 범칙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거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서는 25% - 최대 \$10,000까지 -까지 부과됩니다.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상태(P&S): 당신의 의학적 상태가 의학적 최대호전 상태에 이르렀음. 당신이 일단 P&S 상태에 이르고 나면, 의사는 작업 상해에서 비롯된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정도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애가 2005년 기준표 이하의 등급에 해당하면 P&S에 있는 의학적 최대호전(MMI)을 보십시오. P&S 보고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장애(PD): 의학적으로 최대 호전이 이뤄진 이후의, 결과적으로 소득 창출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지속되는 모든 장애.

영구장애 선지급(PDA): 당신이 *자발적으로* 미래에 영구장애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전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

영구장애(PD) 급여: 당신의 직업 상해로 인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 또는 소득과 생활 능력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급받는 금전.

영구장애 지급금: 보상금 심판서가 발급되기 이전 그리고/또는 이후에 수령하는 분쟁 제외 부분의 영구장애를 근거로 격주간 지급되는 금전.

영구장애 등급(PDR): 직업 상해로 인하여 당신이 종사 가능한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제한되는지 산출한 퍼센티지. 이것은 당신의 의학적 상태, 상해를 입은 날짜, 상해 당시의 나이, 상해 당시의 직업, 직업이 상해에 미친 정도, 그리고 당신이 상실하는 장애 소득 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이로써 당신의 영구장애급여 수령 주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영구장애 등급표(PDRS): 영구장애 등급 판정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가 포함된 DWC의 출간물. 당신이 상해를 입은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표가 장애 등급 계산에 사용됩니다.

영구 부분장애 심판문: 노동자보상 심판관 또는 노동자보상 재심위원회가 작성하는 영구 부분장애에 대한 최종 심판문.

영구 부분장애(PPD) 급여: 당신의 직업 상해로 인하여, 당신이 종사 가능한 직업의 종류 또는 소득과 생활 능력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급받는 금전.

영구 전체 장애(PTD) 급여: 당신이 영구적으로 생계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때 지급받는 급여.

주치의: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M.D. 등급(의사) 또는 D.O. 등급(접골 의사)으로서 과거에 당신을 치료했고 당신의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고려 요청(리컨): 노동자 보상 심판관이 발급한 결정에 항소하는 법적 절차.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여 7명으로 구성되는 사법기관인 노동자보상위원회 재고려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사: 의사, 접골 의사, 정신과 의사, 침구사, 안과의사, 치과의사, 족병 전문의사, 또는 척추지압요법사로서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 주치의의 정의는 더욱 제한적입니다. 주치의를 참조하세요.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상태에 관한 의사의 보고서 (DWC 양식 #AD 10133.36):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양식으로서 상해의 결과로 입게 되는 작업능력과 활동 제한에 관하여, 잠재적인 정규 업무, 수정된 업무 또는 대체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사전 지정 의사: 당신이 직업상의 상해 또는 질병을 입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언했고 특정한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사전 지정을 참조하세요.

사전 지정: 당신이 직업상 상해를 당할 경우 치료를 받고 싶은 개인 주치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절차. 당신은 다음 경우에 개인 주치 의사(M.D.) 또는 접골의사(D.O.)를 사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해당 의사가 과거에 당신을 치료했고 의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상해를 입기 이전에 해당 의사가 차후에 당신에게 직업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하는데 동의할 것, 그리고 상해 이전에 당신이 사용자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

- (1) 당신의 개인 주치의가 당신의 직업 관련 상해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과
- (2) 당신 주치의의 이름과 사업 주소를 알림.

우선 치료의사(PTP): 당신의 직업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의사. 이 의사는 당신의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치료 담당의사 또는 치료 의사라고도 부릅니다.

배달 증명: 해당 문서가 지정된 당사자에게 발송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양식.

P&S 보고서: 당신의 의학적 상태가 안정되면 치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당신의 의학적 상태에 관한 보고서.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상태도 참조하세요.

유자격 의료 감정인(QME): DWC 의학부서의 인증을 받아서 의학 감정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사.

등급: 영구장애 등급을 참조하세요.

재고려: 재고려 요청을 참조하세요.

약식 등급의 재고려: 당신의 변호인이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영구장애 등급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믿을 경우 이용하는 절차.

재고려위원회: 재심위원회를 참조하세요.

정규 직무: 당신의 과거 직무로서 급여와 수당이 상해를 입을 때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당신이 상해를 입을 때 거주했던 곳으로부터 합리적인 통근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

권한부여 요청(RFA): 치료 의사가 청구처리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통지하는데 사용하는 서류양식.

제한: 작업 제한을 참조하세요.

직업복귀 프로그램: 당신의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애(PD)가 발생했고 주 당국이 당신의 PD 급여가 소득상실 정도에 비하여 부적절하게 낮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관계국의 특별 소득상실 보충 프로그램(직업복귀 프로그램으로도 칭함)에 의한 추가 금액 수령자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애 등급표: 영구장애 등급표를 참조하세요.

심각하고 의도적인 위법 행위(S&W): 당신의 상해가 사용자의 심각하고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작성하는 청원서.

합의: 당신의 노동자 보상 지급과 장애의 의학적 처리와 관련하여 당신과 보험회사가 동의하는 것. 합의는 노동자 보상 심판관이 검토하여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장애급여: 전체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기적인 금전 보조. 이 급여는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당신이 받는 노동자 보상급여의 액수만큼 감액됩니다.

특별 소득상실 보충 프로그램: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특정 상해: 작업 중 1건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예: 낙하로 인한 허리 부상, 화학물질이 피부에 튀어서 당하는 화상, 배달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주 단위 주당 평균임금: 지난 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업보험의 포괄 대상이 된 피고용인들에 대한 주당 평균 급여로서 미국 노동부에 보고된 금액. 2006년 효력 기준, 일시 장애수당 인상액은 이 지표와 동일합니다.

주 장애보험(SDI): 부분적인 임금대체보험 정책으로서 주 고용개발국(EDD)이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에게 지급함. SDI는 직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임신 또는 출산으로 발생하는 의학적인 장애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임금 수준이 감소된 유자격 노동자에게 단기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무상 상해를 당했는데 노동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람도 SD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DI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1-800-480-3287에 전화하십시오.

약정 등급: 영구장애 등급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노동자 보상 심판관이 승인해야 합니다.

심판에 의한 약정: 당사자들이 심판과 관련된 합의를 한 케이스. 최종 심판 승인을 위하여 판정관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지급 청구 관련 심판(Stips): 당사자들이 심판과 관련하여 동의하는 합의 여기에는 장애의 의학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이 문서는 판정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관적 요소: 상해를 당한 노동자의 통증과 증상에 관한 기술로서, 의사가 노동자의 영구 장애 판정에 기여하도록 보고하는 내용. 2005 등급 기준에 의하면 주관적 요소의 비중은 대단히 낮으며, 이 기준은 주로 객관적 검사에 따른다.

소환장: 증인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

사건문서 제출명령(SDT): 청구인인에게 발송해야 하는 기록문서.

약식 등급: DWC 장애감정부서에서 산정하는 영구장애 퍼센티지.

약식 등급 재검: DWC 장애감정부서가 발급하는 약식 등급에 반대할 경우 이용하는 절차.

직업 대체 보충급여(SJDB): 노동자의 보상급여. 당신이 2004년 이후에 상해를 당하여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부분 장애를 입었는데 사용자가 다른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2004년1월1일에서 2012년12월31일 사이에 발생했던 상해에 대한 급여는 주 승인 또는 주 인증 교육시설에서 교육적인 재훈련 또는 기능 향상 두 가지 모두 또는 이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한 지불을 돕는다는 약속이 기재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013년1월1일 이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이내의 공립 교육기관 또는 주 적합 교육제공기관 목록에 있는 모든 시행기관에서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면허취득 또는 인증이나 시험 비용 지불용으로 그리고 훈련 과정에 필요한 도구 구입, 1,000 달러 이내의 컴퓨터 장비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500 달러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배정기관 또는 직업 상담사에게서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퍼센트까지 또는 600달러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애(TD 또는 TTD): 상해로 인한 회복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종사했던 직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금전.

일시 부분장애(TPD) 급여: 회복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지만 수입이 상해 이전 수준의 수준보다 적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

영구장애 일시(TTD) 급여: 회복 기간 동안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되는 금전.

교통비: 의료 마일리지를 참조하세요.

치료 의사: 우선치료의사를 참조하세요.

치료 담당의사: 우선치료의사를 참조하세요.

비보험 사용자 급여신탁기금(UEBTF):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동자 보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지급 가능한 DWC 운영 기금.

활용도 심사(UR): 보험회사가 당신의 치료 담당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권장하는 치료비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직업 및 직업복귀 상담사(VRTWC): 당신이 영구장애 상태가 된 경우, 당신의 직업복귀 전략 수립을 돕는 사람 또는 조직. 그들은 당신을 감정하여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상담하고 돕습니다. VRTWC는 어떤 분야라도 최소한 대학원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전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우처: 직업 대체 보충급여(SJDB)와 양도불가 바우처를 참조하세요.

급여 상실 (일시 부분장애): 일시 부분장애(TPD) 급여를 참조하세요.

전인격 장애(WPI): 2013년1월1일 이후의 상해에 대하여, 잔여 장애가 있는 모든 케이스는 WPI 지수 1.4만큼 인상될 것입니다.

작업 제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의사의 기술. 작업제한은 당신이 추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노동자보상행정법 심판관: DWC 직원으로서 노동자 보상 분쟁 관련 결정을 내리고 합의를 승인하는 사람. 심판관들은 노동자보상 재심위원회(WCAB) 사무소에서 청문회를 주관하며, 그들의 결정은 WCAB의 재고려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재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보상 심판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노동자 보상 재심위원회(WCAB): 주 전역의 24개 지역 사무소로 구성되며, 노동자 보상급여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노동자보상 심판관 주재 하에 그 의견을 최초로 청취함.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WCAB 재고려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명으로 구성되는 사법기관으로서 지역 노동자보상 심판관이 제기하는 재심 건을 청취합니다.

노동자보상 보험 등급 사무처(WCIRB): 보험업계의 기금으로 조성되는 보험국의 기관인 민간 조직으로서 노동자보상보험과 사용자책임보험의 통계정보와 등급정보를 제공하고 순보험료 산정 정보를 수집하여 표로 작성합니다.

노동자보상 심판관: 노동자보상행정법 심판관을 참조하세요.

이 사실 자료표에 수록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개정 또는 당신의 구체적인 케이스의 결과로 인하여 법률 해석은 이곳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